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의결

안 건 번 호 제2021-013-104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강원도

대표자

의 결 연 월 일 2021. 7. 28.

주 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 가. 재학증명서 발급 등 업무 수행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중지하고,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법적근거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주민등록등본 등)를 파기한다.
- 나. 가의 시정조치 권고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중학교로서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조사 대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1)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침해신고 건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20. 4. 21.~ 4. 28.)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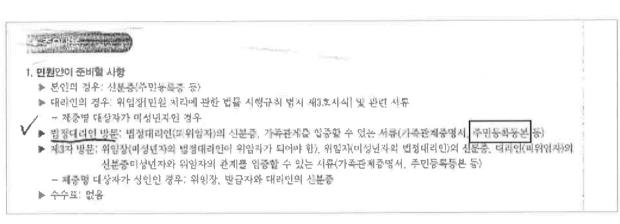
개인정보처리자명	대표자	주요사무	임직원 수	예산액

^{1) 2020. 8. 5.} 시행된 개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소관사무 중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승계(제2항), 법 시행 전 행정안전부가 행한 고시·행정처분 중 그 소관이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에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간주(제3항)

나. 행위 사실

1) 법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피심인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전학용 재학증명서 발급 업무 시, 강원도 교육청에서 배포한 「학교행정 업무편람」에 의거, 법정대리인의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구비서류로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였다.



< 2017 학교행정 업무편람 71p (강원도교육청 발간) 내용 >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21. 7. 8. ~ '21. 7. 21.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 시정조치(안) 사전 통지 및 의견 수렴'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법 규정

2012년 당시「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 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4년 8월에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5년 1월에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3 제1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중략) 9. 제73조에 따른 중학교의 전학 등에 관한 사무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중략) 2. 제1항제6호·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1) 주민등록등본 수집 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2012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재학증명서 발급 업무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주민등록등본을 구비 서류로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했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2)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피심인이 2014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등본을 수집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2014년 8월부터 2019년까지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등본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12年 ′14.8月^{*} '15.1月** ′19.12月 별도동의없이 법적근거없이 위반사항 학생 고유식별번호를 주민등록번호를 없음 처리한 행위 처리한 행위 별도동의없이 법적근거없이 학생의 위반사항 고유식별번호를 주민등록번호를 가족 없음 처리한 행위 처리한 행위

< 시기별 보호법 위반사항 정리 >

* '14.8.6.: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시행

** '15.1.6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전학업무 처리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생성

4. 처분 및 결정

가. 시정조치 권고

- 1) 피심인은 재학증명서 발급 등 업무 수행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 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중지하고, 다른 법령 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법적근거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주민등록등본 등)를 파기한다.
- 2) 피심인은 위 시정조치 권고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결론

피심인의「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권고에 불복이 있는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1년 7월 28일

위원장 윤종인 (서명)

부위원장 최 영 진 (서 명)

위 원 강정화 (서명)

위 원 고성학 (서명)

위 원 백대용 (서명)

위 원 서종식 (서명)

위 원 염흥열 (서명)

위 원 지성우 (서명)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21-013-105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경기도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1. 7. 28.

주 문

피심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 ①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를 지체 없이 정지할 것
- ② 시정조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 ①의 조치를 한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릴 것
- ③ 시정조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①·②의 조치 결과를 제출할 것

이 유

1. 피심인 현황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1)(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피심인의 일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피심인	대표자	설립일자	업종	주요 서비스

¹⁾ 現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8.5. 시행] 이전에 발생한 행위로 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839호, 2017.10.19. 시행] 적용

2. 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9.6.18.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신고된 피심인의 보호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19.6.18.~'20.12.28. 사실조사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17.9.28. 신고인()은 피심인의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선택 동의 사항인 개인정보의 마케팅 활용에 동의했다.

'19.5.22. 신고인은 광고성 문자 수신을 이유로 마케팅 활용 동의 철회를 고객센터에 요구했으나, 피심인은 광고성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철회에 해당하는 사항이어서 마케팅 동의만 부분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에 대해 신고인은 계약 자체의 철회가 아니라 선택 사항에 대한 동의만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보호법 제37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 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2)에 따르면 처리정지 요구권은 개인정보 처리활동에 대한 정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동의 철회권보다 적용 범위가 더넓으며, 광고 및 홍보 수신 거부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2) 2020} 개인정보 보호 법령 해설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발행)

나. 행위 사실 및 위법성 판단

마케팅 활용 동의 철회는 '선택 동의 사항인 마케팅 활용에 대한 동의를 비동의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해당한다.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받고도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를 지체 없이 정지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37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1.7.2.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했으며, 피심인은 '21.7.14.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5. 처분 및 결정 : 시정명령

피심인의 보호법 제37조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 ①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를 지체 없이 정지할 것
- ② 시정조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 ①의 조치를 한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릴 것
- ③ 시정조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①·②의 조치 결과를 제출할 것

6.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 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1년 7월 28일

위원장 윤종인 (서명)

부위원장 최 영 진 (서 명)

위 원 강정화 (서명)

위 원 고성학 (서명)

위 원 백대용 (서명)

위 원 서종식 (서명)

위 원 염흥열 (서명)

위 원 지성우 (서명)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의결

안건번호

제2021-013-106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1. 7. 28.

주 문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I.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舊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¹⁾」(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대표자	설립일자	종업원 수	자본금	전체 매출액
주소				

Ⅱ. 사실조사 결과

피심인은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고객 응대 및 티켓 발급 시스템 관리, 결제 진행, 클라우드 호스팅 및 기반 솔루션 등을 위한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상기 위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받는 자"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동의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1항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각호의 사항(개인 정보 처리를 위탁받는 자^{제1호}, 위탁 업무의 내용^{제2호})을 알리고 동의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¹⁾ 現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시행 2020.8.5.] 개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서 舊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25호, 시행 2020.6.11.]을 적용

같은 조 제2항은 「정보통신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편의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제1항 각호 모두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법령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 제1항에 따른 고지 및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면서 그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5조(개인정보의 처리위탁)제2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6조제2항 및 시행령 제74조 [별표9] (이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기준금액 산정

피심인이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은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아.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	멉 세/6소	600	1,200	2,000

2. 가중 금액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 라.에 따른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하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1. 일반기준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3. 감경 금액

피심인은 자료제출 기간 중 위반행위를 시정하였고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며,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하고 단순 과실로 인한 경우임을 감안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에 따라 기준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1. 일반기준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단순 과실에 의한 경우
 - 3)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등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 4)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로서 법 제 50조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했으나,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위반하지 않은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최종 금액

피심인이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과태료 처분의 근거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위반조항	처분 조항	기준 금액(A)	가중액 (B)	감경액 (C)	최종액 (D=A+B+C)
제25조제2항	제76조제2항제1호	600	=	△300	300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V. 결론

피심인이 정보통신망법 제25조2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6조 제2항에 의한 과태료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2021년 7월 28일

- 위원장 윤종인 (서명)
- 부위원장 최 영 진 (서 명)
- 위 원 강정화 (서명)
- 위 원 고성학 (서명)
- 위 원 백대용 (서명)
- 위 원 서종식 (서명)
- 위 원 염흥열 (서명)
- 위 원 지성우 (서명)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21-013-107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강원도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1. 7. 28.

주 문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시정조치 사항

향후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 성명·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태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중 하나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대표자	개업일자	주요서비스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1)는 2020년 5월 지검(지청)이 시에 통보한 개인 정보 법규 위반 사건을 이첩받아 사실조사('20.11.18 ~ '21.3.11) 및 관련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1.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17년 5월부터 '범죄 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편의점 내부에 CCTV(4대)를 설치 · 운영하면서, CCTV 안내판 양식을 본사로부터 제공받아 편의점 내부에 부착하고 있었으나, 경찰 조사일(2019.11월)까지 법에 정한 기재항목인 설치장소, 관리책임자 성명 등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CCTV 영상정보 열람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지 않아 접근권한이 없는 자 (사업소 반장, 참여주민)가 CCTV 영상정보에 접근하여 활용한 사실이 있다.

¹⁾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시행 2020. 8. 5.] 부칙.

제3조(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②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7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는 보호위원회가 숭계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의 행위와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 중 그 소관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보호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보호위원회의 행위 또는 보호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5.27.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1.6.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

가.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839호2),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5조제4항은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제1호), 촬영 범위 및 시간(제2호),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호)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5조제6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 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1)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제2호) 등' 안전성 확보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 2) 또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이하 '고시'라 함) 제47조에서 법 제29조 및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조치(제2호)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²⁾ 現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개정 시행(2020.8.5.) 이전에 발생한 행위로 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10.19.] 적용

2. 위법성 판단

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설치장소 등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항목이 누락된 안내판을 부착한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

나. 접근 권한이 없는 직원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하여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등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5조제6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보호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설치목적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안내판을 부착한 피심인에게 같은 법 제6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정조치를 명함

▶ 향후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6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타.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 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6호	600	1,200	2,400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 다.에 따른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

1. 일반기준

- 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라도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며, 위반행위가 담당자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였고, 추가 피해가 없는 점, 위원회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1. 나.에 따라 기준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1. 일반기준

- 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였거나 해소한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6항 위반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과태료 처분의 근거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만원)
위반조항	위반내용	기준 금액(A)	가중액 (B)	감경액 (C)	최종액 (D) D=(A+B+C)
법 §25⑥	안전성 확보 미조치	600	25=20	△300	300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 명령, 보호법 제25조(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제6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에 의한 과태료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2021년 7월 28일

- 위원장 윤종인 (서명)
- 부위원장 최 영 진 (서 명)
- 위 원 강정화 (서명)
- 위 원 고성학 (서명)
- 위 원 백대용 (서명)
- 위 원 서종식 (서명)
- 위 원 염흥열 (서명)
- 위 원 지성우 (서명)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21-013-108호

안 거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심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1. 7. 28.

주 문

피심인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에 대하여 다음과

가. 과태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I.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입주민을 대표하여 공용부·전용부 시설물 등의 유지 및 운영, 행위 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등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사업자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대표자	개업일자	주요서비스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1)는 2020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공익신고에 대해 사실조사('20.7.28 ~ '20.9.21) 및 관련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1. 행위 사실

가. 피심인은 아파트 홈페이지에 해당 게시물별 게시기간을 정하여 공지하고 있으면서, 입주자 대표 선거 입후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게시기간 및 당선인 임기가 지났음에도 삭제하지 않고 게시한 사실이 있다.

나. 피심인은 2020년 1월 '아파트 종합관리 S/W 사용 및 전산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사 대표자와 그 가족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수집한사실이 있다.

다. 피심인은 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CCTV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위탁하였으나, 아파트 홈페이지 등에 영상정보처리 위탁관련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2.25.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1.3.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¹⁾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시행 2020. 8. 5.] 부칙.

제3조(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7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는 보호위원회가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의 행위와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 중 그 소관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보호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보호위원회의 행위 또는 보호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

가.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839호²),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 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①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보호법 제26조제2항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는 위탁하는 업무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게시기간 및 당선인 임기가 끝나 개인정보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그 개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후에도 아파트 홈페이지 게시판에 선거 입후보자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게시물 등을 삭제하지 않고 게시한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나. 용역사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수집하여 보관한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에 해당하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된다.

²⁾ 現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개정 시행(2020.8.5.) 이전에 발생한 행위로 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10.19.] 적용

- * 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법령*에 근거한 국토부 고시**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을 수집한 것으로 위법성 착오에 해당된다.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③ 법 제25조제2호에서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가. 입찰의 절차, 나. 입찰 참가자격, 다. 입찰의 효력
 - 라. 그 밖에 사업자의 적정한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7조(제출서류)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한다.
 -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다. 피심인이 아파트 홈페이지에 '개인영상정보처리 위탁'이라고 명시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 홈페이지에 경비용역 내용 및 관제 인력 등이 포함 된 계약서를 게시하고 있어, 위탁업무 및 수탁자를 공개하도록 한 보호법 제26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마.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4호	600	1,200	2,400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 다.에 따른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 >

1. 일반기준

- 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라도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담당자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였고, 추가 피해가 없는 점, 위반행위의 시정을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1. 나.에 따라 기준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1. 나. >

1. 일반기준

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였거나 해소한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과태료 처분의 근거		과	태료 금역	백 (단위:	만원)
위반조항	위반내용	기준 가중액 감경액 금액(A) (B) (C)		감경액 (C)	최종액 (D) D=(A+B+C)
법 §21①	개인정보 미파기	600	137	△300	300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 (과대료)제2항제4호에 의한 과대료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2021년 7월 28일

위	원 장	윤	종	인	(서	명)
부위	원장	최	영	진	(서	명)
위	원	강	정	화	(서	명)
위	원	고	성	학	(서	명)
위	원	明	대	용	(서	명)
위	원	서	종	식	(서	명)
위	원	염	हे	열	(서	명)
위	원	지	성	우	(서	명)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21-013-109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씨유스킨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1. 7. 28.

주 문

1. 피심인 ㈜씨유스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 유

I.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화장품을 제조하여 수출하고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舊개인정보 보호법¹⁾」(이하 "보호법"이라 함)이 적용된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대표자	설립일자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Ⅱ. 사실조사 결과

1. 행위 사실

피심인은 신고인의 대기발령 기간 중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였고 신고인의 복직 이후 CCTV에서 잘 보이는 자리로 재배치하였다.

사건조사 과정에서 피심인은 회사의 자산과 직원의 안전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직원들의 구두 동의를 받아 CCTV를 설치하였고 신고인을 감시할 목적은 아니라고 소명하였으나,

국민권익위 조사(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조사)에서 피심인은 신고인의 대기 발령 당시 사무실 출입을 금지할 목적으로 설치하였고, 신고인 복직 이후 신고인이 위해를 가할 것을 직원들이 두려워하여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제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¹⁾ 現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시행 2020.8.5.] 개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행위로 舊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10.19.]을 적용

이에 국민권익위는 CCTV 설치가 도난방지 등의 일반 목적이 아닌 신고인의 가해행위를 우려한 조치라고 인정하므로 이는 신청인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피심인은 CCTV를 설치('17.5.31.)할 때 직원들의 구두 동의를 받았다고 소명하였고 설치 당시 직원들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다는 서면 확인서를 제출('19.4.2.)하였으나 CCTV를 설치한 날은 신고인이 자택 대기발령 기간 중이라 동의를 받을 수 없었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06.23.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고, 피심인은 2021.07.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6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개된 장소'가 아닌 '비공개된 장소'(출입이 통제되어 해당 사무실에 직원 등특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가 아닌 제15조가 적용된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특정 개인의 영상정보를 수집하였으므로 보호법 제2조 (정의)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회사 사무실은 비공개된 장소로서 피심인은 CCTV를 설치·운영하여 개인의 영상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신고인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운영하여 신고인의 영상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보호법 제15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피심인이 말하는 직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CCTV 설치의 이익은 명백하게 신고인의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2] (이하 "과태료의 부과기준"이라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산정

과태료 기준금액은 피심인이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과태료 금액(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2회	3회 이상
		위반	위반	위반
가.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1호	1000	2000	4000

나. 가중 금액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 다.에 따른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1. 일반기준

- 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라도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감경 금액

피심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소기업에 해당하고 사건조사 전 이미 CCTV를 제거하였으며, 직원들의 위해에 대한 불안감 해소라는 설치 동기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나.에 따라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1. 일반기준

- 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였거나 해소한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최종 금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과태료 처분의 근거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위반조항	처분 조항				최종액 (D=A+B+C)	
제15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호	1,000	<u>-</u>	△500	500	

되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2. 공표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現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해당함에 따라 처분결과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舊)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

(舊)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한 내용 및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o 위반행위를 한 자 : ㈜씨유스킨
- o 위반행위의 내용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위반
- o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 : 2021년 7월 28일 과태료 500만원 부과

2021년 00월 0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V. 결론

피심인이 보호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의한 과태료, 現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에 의한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2021년 7월 28일

- 위원장 윤종인 (서명)
- 부위원장 최영진 (서명)
- 위 원 강정화 (서명)
- 위 원 고성학 (서명)
- 위 원 백대용 (서명)
- 위 원 서종식 (서명)
- 위 원 염흥열 (서명)
- 위 원 지성우 (서명)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21-013-110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공인중개사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1. 7. 28.

주 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I. 피심인의 현황

피심인은 부동산 중개 사업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 및 최근 2년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대표자	개업일자	주요서비스	종업원 수
		부동산 중개업	

< 피심인의 최근 2년간 매출액 현황(단위 : 천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년 평균
매출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2020. 1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신고된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사실조사(2020.12.18. ~2021.2.1.) 및 관련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20. 5월 두 차례 본 건 민원 신고인(이하 '신고인'이라 함)에게 부동산 매도 의사를 묻는 전화를 한 사실이 있고('20.5.20., 5.21.),

신고인은 피심인에게 본인의 개인정보(전화번호) 수집 출처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20.11.26., 11.30., 12.4.), 피심인은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위원회는 2021.5.3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1.6.16.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심인은, 입증 자료는 없지만, 전화번호는 신고인이 제공한 것이고, 신고인과 소송 진행 중인 상황이라 수집 출처 요구에 대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서, 사실 조사 이후 보호법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고, 중개물건 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고 있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불경기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요청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

보호법 제2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제1호},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제2호}, 제37조에 따른 개인 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제3호})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신고인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신고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출처 확인 요구를 받고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0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관련, 피심인은 사실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전화번호를 직접 수집한 사실이 없고, 수집 출처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21.2.1.자 사실확인서), 처분의 사전통지 이후에는 이를 번복하고 신고인으로부터 수집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신고인 이외로부터 수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0조제1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6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라.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3호	600	1,200	2,400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라.에 따른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중을 하지 않고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라. >

1. 일반기준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 고려하여 괴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이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였고 추가 피해가 없는 점, 위반 행위가 한 건에 불과하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1. 다.에 따라 기준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 >

1. 일반기준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0조제1항 위반에 대해 다음과 같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과태료 처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위반 조항	처분 조항	기준 금액(A)	가중액 (B)	감경액 (C)	최종액 (D=A+B+C)
제20조제1항	제75조제2항제3호	600	=	△300	300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제1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2021년 7월 28일

위 원	년 장	윤	종	인	(서	명)
부위	원장	최	영	진	(서	명)
위	원	강	정	화	(서	명)
위	원	고	성	학	(서	명)
위	원	백	대	용	(서	명)
위	원	서	종	식	(서	명)
위	원	염	हे	열	(서	명)
위	원	지	성	우	(서	명)